

민원 사무명	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					
민원내용	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					
근거법규	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내지 제107조 .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6조					
처리부서	민원지적과	협조부서 (기관)	없음	처리 기간	없음	
현장 조사사항	없음	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	접수 ⇒ 서류검토 ⇒ 신고처리 (위임전결 : 담당)					
구비 서류	<민원인 제출서류> 1. 등록부정정신청서 1부 2.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 3.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(확정판결에 의한 경우) 4. 신분증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> 없음					
관련부서 (기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	
	없음					
후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차	시기	처리부서	조치사항	
	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 (11호)	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	처리후 즉시	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	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 정리	
수수료 및 제반경비	없음	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없음					